

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4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8년 10월 15일

제 출 자 : 예 산 군 수

□ 개 정 이 유

- 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시 각종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낭비 요소가 많음.
- 또한 기구정원조례 개정시 많은 조직법규를 개정해야 하므로 조례 개정과정에서 법규운용 미숙으로 재개정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음.

□ 주 요 골 자

- 군 본청 실·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 규정 (안 제2장)
- 직속기관(보건소, 지도소)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 규정 (안 제3장)
- 사업소 행정기구 설치와 분장사무 규정 (안 제4장)
- 읍·면의 직무 읍·면장 관할구역을 규정 (안 제5장)

□ 참 고 사 항

- 행정자치부 자제 12200-292('98. 8. 28)호 기구정원 관련 조례 모델(안)

예산군조례 제 호

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1조 내지 제107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·과장의 직급 등)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·과장 등 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과 실·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·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, 사업소의 장의 직급,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·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2 장 군 본 청

제3조(실·과의 설치)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, 종합민원실, 자치행정과, 재무과, 사회복지과, 환경보호과, 산업과, 산림축산과, 지역경제과, 건설과, 도시과,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.

②실·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.

1. 기획감사실

가.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

나.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공약사항, 지시사항 및 군의회 운영지원

- 다. 예산편성, 예산집행의 감독 및 예산운용
- 라. 예비비 관리 및 지방채, 채무부담행위
- 마. 군 행정감사와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
- 바.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
- 사. 자치법규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아. 소송수행 총괄과 통계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

2. 문화공보실

- 가. 군정홍보와 언론 공보 자료 수집 및 공보매체 보급 육성
- 나. 문화관광계획 수립 및 공연장, 공연자 지도감독
- 다. 문화재 보호관리 및 향교, 사찰, 예당국민관광지 관리
- 라. 체육진흥 및 공동체육시설 관리
- 마. 청소년 보호육성 및 청소년 관련 업무

3. 종합민원실

- 가. 민원서류 수발, 통제 및 창구 즉결민원처리
- 나.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
- 다. 개별공시지가 조사
- 라.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서류 처리
- 마. 부동산 중개업 및 토지거래 관련 업무
- 바. 지적공부정리 관리 및 지적전산 운영
- 사. 지적측량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감독

4. 자치행정과

- 가. 공무원 직제·정원관리 및 임용·징계·소청·인사발령
- 나. 선거, 내무행정 역점시책추진 및 여론동향 관리
- 다. 읍·면 지도감독·지원육성 및 행정구역 개편
- 라. 공무원 복무단속 및 후생복지·표창
- 마. 문서수발·통제·보존 및 공인관리
- 바. 행정통신·전산 및 정보화 업무
- 사. 새마을운동에 관한 군시책 종합계획 수립 조정
- 아. 그 밖의 다른 실·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5. 재무과

- 가. 세외수입 부과·징수
- 나. 기부금품 모집 통제 및 수입증지 관리
- 다. 계약 및 세출예산 정리
- 라. 물품 구매관리 및 국·도비 집행관리
- 마. 지방세 부과고지 및 과표 조정
- 바. 지방세정 전산운영관리
- 사. 지방세·국세위탁징수 및 체납지방세 관리
- 아. 국·도비 세입 및 자금관리
- 자. 국·공유재산 관리 및 취득·처분

6. 사회복지과

- 가.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복지업무
- 나.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 및 보훈업무
- 다.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신고·허가업무 처리
- 라. 불법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
- 마. 아동·노인·여성복지 증진
- 바. 묘지 및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

7. 환경보호과

- 가. 환경보전 및 물관리대책, 공해배출업소 및 환경오염지도단속, 청소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
- 나.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, 오염도측정에 관한 업무
- 다. 자연보호운동(행락질서확립, 국토대청결) 추진
- 라.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업무
- 마.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위반자 조치
- 바.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추진 및 운영관리 업무
- 사. 폐기물관리 및 오수분뇨·축산폐수관리에 관한 업무

8. 산업과

- 가. 농지관리 및 농업관련 단체 지도육성
- 나. 농림사업 총괄 및 식량증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

- 다. 농업기계 및 자재지원
- 라. 정부양곡 수급관리 및 양정업무
- 마. 농산물 유통관리 및 과수생산 종합계획 수립 추진
- 바. 원예 및 특용작물 생산지원

9. 산림축산과

- 가. 조림·육림사업 및 산림형질변경 보전임지 전용허가 관리
- 나. 산불예방·진화 및 산림보호·부정임산물 단속
- 다. 축산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,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
- 라. 가축방역 및 축산물 가공유통 업무, 낙농진흥 및 조사료 생산관리
- 마. 내수면 개발계획 수립 및 수산자원 조성

10. 지역경제과

- 가. 지역경제 및 생활연료 수급 안정·노정관련 업무
- 나. 공업기반육성 및 농공단지 조성관리
- 다. 운수행정 및 교통안전 주차장 관리

11. 건설과

- 가. 토지이용개발 및 자연공원관리 등 건설행정일반
- 나. 국·공유 행정재산(폐천부지 포함) 및 하천유지관리
- 다. 골재 및 지하수 개발 이용관리
- 라. 자연재해대책 및 하천, 소하천 공사관계
- 마. 농업기반조성사업 및 한해수해대책
- 바. 수리시설 및 국유재산관리
- 사.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·포장공사
- 아. 접도구역 관리 및 도로관련 업무추진
- 자. 광고물 허가관리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추진
- 차. 농어촌정주권 및 생활용수, 비법정 도로 관리사업

12. 도시과

- 가.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사업 집행
- 나. 일단의 주택지 조성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

- 다. 소도읍 가꾸기 사업 및 건축·주택건설 인·허가
- 라. 농촌 주택개량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
- 마. 공동주택 관리 및 위반 건축물 지도 단속
- 바. 상·하수도 시설공사 및 종합계획 수립
- 사.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·허가 및 지도 감독
- 아. 지방 공기업 회계관리
- 자. 온천지구 개발 및 공영개발 업무 추진

13. 민방위재난관리과

- 가. 민방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
- 나. 의용소방대 운영 및 비상대비 업무
- 다. 제1국민역조사 및 징병검사
- 라. 현역병(상근예비역) 입영 집행
- 마. 공익근무요원 및 동원예비군 관리
- 바.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사고수습 활동
- 사. 공공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

제 3 장 직속기관

제1절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

제4조(설치)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·제8조·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는 보건소를, 읍·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.

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.

제5조(소장) 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·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두며,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6조(업무)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②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.

제2절 농업기술센터

제7조(설치)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농촌지도사업·교육훈련사업·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.

②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100-15에 둔다.

제8조(소장)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내의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9조(업무)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1.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조정
2. 농업전문인력육성 및 농업인 교육훈련
3. 농촌생활개선사업 지도
4. 농업경영개선, 농업기술, 농업정책 지도
5. 식량·경제 작물기술 보급
6. 우량가축 사양 및 축산기술 보급
7. 지역특화작물 육성 및 과학영농기술 보급
8. 농업환경개선 및 토양관리 지도

제 4 장 사 업 소

제10조(설치) ①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.

제11조(소장) 공공시설관리사업소 및 위생환경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2조(업무)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공공시설관리사업소

- 가. 문예회관, 공공도서관, 자유회관 사용 및 시설물 관리
- 나. 충의사 시설물 관리운영, 윤봉길 의사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
- 다. 사적 유물에 대한 조사연구 및 4.29 행사 주관
- 라. 추사고택 시설물 관리운영 사항
- 마. 김정희 선생의 사적 유물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위업선양
- 바. 공설묘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- 사. 공설묘지 이용 홍보 및 묘지 보존관리

2. 위생환경사업소

- 가. 분뇨처리 및 시설물 관리운영
- 나. 방류수 수질관리
- 다. 자체 회계업무 처리

제 5 장 읍·면

제13조(직무) 읍·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, 민원서류발급, 리·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업무를 관장한다.

제14조(읍·면장) 읍·면에는 읍·면장을 두며, 읍·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5조(관할구역)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·면의 명칭과 관할구역, 그리고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읍·면의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1.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
2. 예산군보건소설치조례
3. 예산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
4. 예산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

[별표 1]

보건진료소의 명칭·위치 및 관할 구역 (제3조 관련)

명칭	위치	관할 구역	명칭	위치	관할 구역
예산 수철 보건진료소	예산읍 수철리 176-2	수철리, 신례원2리	웅봉 입침 보건진료소	웅봉면 입침리 산3-5	입침리, 등촌리, 후사리
삼교 보성 보건진료소	삼교읍 이리 480-7	이리, 수촌리, 목1.2리, 신리	덕산 서부 보건진료소	덕산면 외나리 267-1	외나리.2리, 내나리, 북당1.2리, 대농리, 낙상1.2리, 사천1리
대술 장북 보건진료소	대술면 장북리 70	장북리, 화산리, 송석리, 권곡리, 상항리, 방산리	봉산 서부 보건진료소	봉산면 사석리 16-4	봉림리, 사석리, 옥전리, 낭곡리, 하평리
대술 예동 보건진료소	대술면 이터리 620-4	이터1.2리, 마진1.2리	봉산 금치 보건진료소	봉산면 금치리 102-4	금치1.2리, 궁평2리
신양 만사 보건진료소	신양면 만사리 97	만사리, 가지리, 여래미리, 죽천2리	고덕 몽곡 보건진료소	고덕면 몽곡리 64-8	상동1리, 몽곡2리, 오추리, 호읍1리
신양 황계 보건진료소	신양면 황계리 191-4	무봉리, 황계리, 광시면 월송리	신양 조곡 보건진료소	신양면 조곡리 168-14	별리, 중예리, 예림리, 조곡리
광시서초정 보건진료소	광시면 서초정리 497-2	서초정리, 장전리	오가 양신 보건진료소	오가면 양막리 138-3	양막리, 내량1.2리, 분천2.3리
광시 장신 보건진료소	광시면 장신리 705-1	장신1.2리, 신흥리			
대흥 동부 보건진료소	대흥면 탄방리 81	탄방리, 하탄방리, 금곡리, 지곡리, 대롤리,			

[별표 2]

사업소의 명칭·위치 (제10조 관련)

사업소명	위치
공공시설관리사업소	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산4-15
위생환경사업소	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67-3